

형 의 시 효

1. 시효의 효과(형법 77조)

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.

2. 시효의 기간(형법 78조)

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.

- 1. 사형은 30년
- 2.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
- 3.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
- 4.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
- 5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
- 6. 5년 미만의 자격정지, 벌금, 몰수 또는 추징은 5년
- 7. 구류 또는 과료는 1년
- 3. 시효의 정지(형법 79조)

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.

4. 시효의 중단(형법 80조)

시효는 사형, 징역,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, 벌금, 과료,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.